

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(변경인가)신청서						처리기간 40일
신 청 인	① 상 호 (명 칭)					
	② 성 명 (대 표 자)		③ 생년월일			
	④ 주 소		(전화:)			
⑤ 터미널의 명칭						
⑥ 위치						
⑦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						
⑧ 시 설 사 용 료						
⑨ 변 경 내 용						
⑩ 변 경 이 유				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(변경인가)를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시·도지사 귀하						
※ 첨부서류 1.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(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1부 2. 시설사용료의 신·구 대비표(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 3.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회사본(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 1부						수수료
						4,000원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